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가단5349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

담당변호사 손창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6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9. 7. 1. 접수 제92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윤명화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전남 장성군 D 임야 19,140㎡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

가. 원고는 2019. 1. 23.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소외 C에게 48,500,000원을 대여하고, 위 C의 2019. 1월분 계금 1,500,000원을 대납해주었습니다.

나.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8051호 사해행위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, 위 사건 판결선고 결과 “ 위 C는 원고에게 금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0.부터 2021. 8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 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(첨부 갑 제1호증 판결문).

다.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위 채무명의를 득하였습니다.

2. 사해행위와 관련하여

가. 관련사건과 관련하여

(1)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. 1. 23.경 피고 C에게 5,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하였는데 상환기일인 2019. 6. 25.경까지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습니다.

(2) 즉, C는 원고를 계주로 한 번호계에 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5,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계금을 선지급받은 이후 2019. 10.경까지 계금을 불입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고, 그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.

(3) 그 후 원고는 2019. 10. 중순경부터 위 C의 행방을 찾던 중 C 소유이던 아파트(광주 동구 E아파트 F호)가 2019. 7. 8.경에 이미 그의 조카 사위인 소외 G 앞으로 위 같은 해 6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(4) 이에 따라 원고는 위 C 및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8051호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결과,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은 승소하였으나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.

(5) 한편 위 G는 위 관련사건에서, 원고에게, 채무자 C의 무자력 입증을 촉구하면서 C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 이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합니다)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(첨부 갑 제2호증 위 관련사건 답변서 참조).

(6) 그 결과 위 관련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청구가 기각되었는바, 위 사해행위 취소 부분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(갑 제1호증 판결문).

3.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임야의 처분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

하여야 하고,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1)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,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(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). 다만,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,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, 시간적으로 근접한지,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,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),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,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기는 하나, 그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피고 G와 B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이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위 각 계약을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계약을 별도로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.

3)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6. 20. 기준으로 피고 C의 소극재산은 178,997,128원인 사실 및 적극재산은 130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,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²⁾, 한편,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2019년경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임야가 1

㎡당 4,000원의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4)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(원고는 위 관련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)

나. 채무자(C)의 무자력과 관련하여

(1) 위 관련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, 소외 G와 C 사이에 2019. 6. 20.자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위 아파트 이외에 76,560,000원(19140㎡x4,000원(1㎡당)) 상 당의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

(2) 한편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(2019. 6. 28.) 위 아파트 가액은 1억3,000만 원이고, 이 사건 임야는 76,560,000원으로서 C의 총 재산가액은 206,560,000원(1억 3,000만 원 + 76,560,000원)이고(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),

(3) 그 당시 C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는 근저당권자 H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등 합계금 105,997,128원, 원고에 대한 5,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, G에 대한 2,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합계금 178,997,128원(105,997,128원 + 5,000만 원 + 2,300만 원)이 되어 (갑 제6호증 사실조회회신서, 갑 제7호증 예금거래기록명세표),

(4) 계산상으로 따지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(2019. 6. 28.) C의 총 재산가액이 206,560,000원으로서 그의 총 채무액 178,997,128원에 비해 27,562,872원(206,560,000원 - 178,997,128원)이 초과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

(5) 그러나, 이 사건 임야 역시 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6. 20.의 불과 8일 후인 같은 해 6. 28.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, 결국 C는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스스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

(6) 한편,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,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,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

(7) 그러나, C가 처분한 이 사건 임야 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6. 20.의 불과 8일 후인 같은 해 6. 28.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의 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.

(8) 따라서 피고의 행위 또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, C 소유의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G 및 피고는 C의

전 재부와 딸의 각 신분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, 위 각 부동산 처분의 시기 또한 8일 간격으로 근접하다고 할 것이고, 위 각 부동산 처분의 동기 및 기회 역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.

(9) 따라서 C가 그의 모든 재산인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스스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,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(10) 한편, 원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감정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고자 합니다.

다.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관련하여

(1)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,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 당시인 2019. 7. 1.경에는 원고가 비록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등에 대한 채무명의를 득하지는 못하였으나,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중여계약 당시인 위 같은 해 6. 28.경에는 채권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금전대차관계, 즉 장래채권이 이미 존재하여 C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실현되었으므로,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.

(2) 한편, 피고는 C의 친 딸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보면(첨부 갑 제8호증 가족관계증

명서),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, 위 신분관계상 피고의 악의는 C의 사해의사와 더불어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C의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,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